

경업금지 약정서(퇴사자)

주식회사 ABC(이하, '회사' 라 함)와 (홍길동)(이하 '퇴사자' 라 함)은 퇴사함에 있어서,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회사와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퇴사자의 취업 제한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.

제 2 조 (영업비밀)

- ① 퇴사자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주요 영업비밀 기타 영업자산 (이하 '영업비밀' 이라 한다)은 아래 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. 다만, 퇴사자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 이에 제한되지는 아니 한다.
- ② 제 1 항의 영업비밀은 회사의 소유로서 퇴사자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
제 3 조 (퇴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)

- ①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그 복사본, 모방품,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,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퇴사자의 경업금지의무)

- ① 퇴사자는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[]년의 기간 동안 아래 표에서 기재한 지역 내에서 아래 표에 기재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,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,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.

[경업금지 지역] _____

[경업금지 업무] _____

- ② 퇴사자는 취업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제 1 항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,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경업금지에 대한 보상)

회사는 퇴사자의 퇴직일로부터 ()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대가로 금 [] 만원을 지급한다.

제 6 조 (위약금)

퇴사자는 제 2 조 내지 제 4 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제 5 조에서 정한 금액에 금 [] 만원을 더하여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권리의무의 양도, 계약의 변경)

-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.
-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 8 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약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[서울중앙지방법원]을 제

1 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

회사와 퇴사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(또는 기명날인)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(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, 이에 서명함)

20__ . __ . __.

서약자: 홍 길 동 (서명)

주식회사 ABC 귀하